

기업공시 유의사항 ⑦⑧

이 자료는 회원사 실무진의 공시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에서 공시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연재하는 것입니다.

의문사항 또는 연재 요청 주제가 있는 경우 본회 편집실(02-2087-7141~2, plan02@klca.or.kr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개정 「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」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음

1. 주요종속회사 기준 조정

- 사업보고서의 주요 종속회사 기준을 조정하여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부담 완화

-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(500억원 → 750억원)
- 종래 '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'도 주요종속회사로 포함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외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
[관련조문 : 제3-1-1조(회사의 개요), 제3-2-1조(회사의 연혁), 제4-1-1조(일반원칙), 제6-1-1조(일반원칙), 제11-2-1조(중요한 소송사건), 제11-2-2조(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, 수표현황), 제11-2-3조(채무보증현황), 제11-2-4조(채무인수약정 현황), 제11-2-5조(그 밖의 우발채무 등), 제11-3-1조(제재현황), 제11-3-2조(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)]

2.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조건 기재양식 신설

- 사업보고서 본문에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의 내용을 기재하는 표를 신설하여 발행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

- RCPS(상환전환우선주) 등 종류주식의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기재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
[관련조문 : 제3-4-3조(다양한 종류의 주식)]

3. 배당 관련 표에 당기순이익을 연결기준으로 기재

-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배당 관련 표에 당기순이익을 연결기준으로 기재
 -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을 기준으로 기재

※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배당 관련 표의 주당순이익(EPS)도 함께 연결기준으로 기재함에 유의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[관련조문 : 제3-6-1조(배당)]

4. 재무사항 관련 사업보고서 등 편제 개편

- 요약재무정보 기재기간을 현행 5사업연도에서 3사업연도로 완화
 - 재무제표 주석과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항목을 제5-5-1조로 신설
 -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등을 포함시키고, 주총회 미승인시 재무제표 상단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[관련조문 : 제5-1-1조(요약재무정보), 제5-1-2조(요약연결재무정보), 제5-1-5조(외국기업의 추가고려사항), 제5-4-1조(재무제표), 제5-4-2조(연결재무제표), 제5-4-3조(외국기업의 추가고려사항), 제5-5-1조(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), 제5-5-2조(대손충당금 설정현황), 제5-5-3조(재고자산 현황 등), 제5-5-4조(공정가치평가 내역), 제5-5-5조(채무증권 발행실적 등), 제5-5-6조(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), <별지 제1호 서식>, <별지 제4호 서식>, <별지 제9호 서식>, <별지 제11호 서식>, <별지 제12호 서식>, <별지 제15호 서식>, <별지 제16호 서식>, <별지 제18호 서식>, <별지 제19호 서식>, <별지 제35호 서식>]

5. 감사의견 이외의 특기사항 기재 의무화

- 감사의견 이외의 특기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[관련조문 : 제5-2-1조(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)]

6.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 관련 기재사항 완화

-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 공시와 관련하여 지분율, 대표자, 재무현황, 사업현황 등 주요 정보만을 공시하도록 하여 공시부담 경감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[관련조문 : 제8-1-1조(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)]

7.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관련 작성예시 개정

-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핵심사항(보수의 종류, 지급근거, 산정항목, 보수액 및 산출과정 등)을 기재하도록 작성예시를 개정하여 성과와 보수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[관련조문 : 제9-2-1조(이사·감사의 보수현황등)]

8. 공시서식상 주식의 종류 구분 개정

-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등에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공시할 수 있도록 주식의 종류 구분을 '보통주·우선주'에서 '보통주식·기타주식'으로 개정
 - 사업보고서의 임원 소유주식 구분을 '보통주·우선주'에서 '의결권 있는 주식·의결권 없는 주식'으로 개정하여 공시의 실효성 제고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
[관련조문 : 제9-1-1조(임원의 현황), <별지 제38-6호 서식>
~ <별지 제38-9호 서식>, <별지 제38-13호 서식>
~ <별지 제38-16호 서식>, <별지 제38-23호 서식>,
<별지 제56호 서식>]

9. 지분공시 관련 서식 개정

- 지분공시 서식의 '증권의 종류'란에 '신주인수권표시증서'를 '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'으로 개정하고
-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서식과 관련하여 위임장 용지 교부방법에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추가, 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의 권유 허용 및 위임장 용지 작성예시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 명칭 추가 기재 등 개정

※ 위임장 용지 교부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관한 문의가 빈번한 바 발행회사의 홈페이지,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홈페이지(evote.ksd.or.kr)가 가능
(단, 금감원 다투(DART) 홈페이지는 불가능함에 유의)

☞ '15. 2. 10.부터 시행

[관련조문 : <별지 제44호 서식>, <별지 제45호 서식>,
<별지 제46호 서식>, <별지 제47호 서식>]

10. 자기주식 취득 · 처분 관련 서식 개정

- 자기주식취득(처분)결과보고서 서식 등에 주요사항보고서상의 취득(처분) 예정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의 비교항목을 신설하고,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 반영

☞ '15. 3. 3.부터 시행

[관련조문 : <별지 제51호 서식>, <별지 제52호 서식>,
<별지 제53호 서식>, <별지 제54호 서식>]

